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공인중개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·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,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, 중개보조원 직무교육
시간 확대 (안 제28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2호 중 “교육시간: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”를 “교육시간: 64시간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교육시간: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”를 “교육시간: 8시간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교육시간: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”를 “교육시간: 16시간 이상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3제2호 중 “: 2023년 1월 1일”을 “: 2025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)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교육시간: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</u></p> <p>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교육시간: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</u></p> <p>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교육시간: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</u>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제37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</p>	<p>제28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교육시간: 64시간 이상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교육시간: 8시간 이상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교육시간: 16시간 이상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7조의3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</p>

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
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
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
한다.

1. (생략)
2.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
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:
2023년 1월 1일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:
2025년 1월 1일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53